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7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미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미애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고,

○ 국외소재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재정지원(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여 국외소재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 안 제5조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설치 및 운영을,
- 안 제8조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 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67조에도 부합하는 조례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37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송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송미애,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이옥규, 정상교, 오영탁

1. 제정 이유

○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확립,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고,

○ 국외소재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재정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23.(20일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

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